

위임전결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직제조정('20.1.7 시행)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 내용 등을 위임 전결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동 규정의 개정 추진

2. 주요 개정 내용

가. 직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

나. 권한·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업무단위 세분화에 따라 전결권 신설

- * 안전·보건·고객만족·공정사회(경영지원처), 조사연구·통계관리(연구원), 임대리츠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(기금관리실), 도시계정 결산·자금관리(도시재생기획처), 도시 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·사업발굴·사업화 지원(도시재생심사처) 등 세부업무 반영

다. 업무처리의 효율화 등을 위한 전결권 조정

- *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(기획조정실) : 사장 → 본부장
- * 공공지원 임대리츠 공모 공고(기금관리실) : 본부장 → 부서장
- * 사회공헌·지역협력 추진실적 보고(경영지원처) : 부서장 → 본부장
- * 채무명의 획득 및 시효중단 등 소송(리스크준법실) : 본사부서장 → 영업부서장 추가

라. 부서장 및 팀장의 재택근무 전결권 기준 마련

- * 부서장 전결(보직자 및 팀원) → 보직자의 재택근무는 본부장 전결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BIFC 18층, 기획조정실
- 담당자(이메일) : 이승호(lsh@khug.or.kr)
- 전화번호 : (051)955-5316
- 팩스번호 : (051)955-530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(기간 20일 미달 시)

공사 사규 정비 등과 연계하여 업무별 권한·책임 명확화를 위해
조속한 규정 개정 필요